# 죽전역「에일린의 뜰」 입 / 주 / 자 / 모 / 집 / 공 / 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1년 05월 07일]

죽전역 에일린의 뜰 Eileen's Garden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죽전역 에일린의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jj-eileen.com)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 사전 예약제 안내
- 죽전역 에일린의뜰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가 한정되므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본 아파트 홈페이지(http://www.jj-eileen.com)를 통하여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예약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죽전역 에일린의 뜰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53-745-1006)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1.05.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 7년간 |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07)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0.11.0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거주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일 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시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당첨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음,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본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j-eilee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청약과열지구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20.03.16.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의 제2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해당 주택의 분양금액이 비교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6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 구분 | |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 2) 수도권외의 지역 | 가) 광역시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 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반1순위 |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검수 (당첨자 서류검수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
| |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 | |
| 일정 | 2021.05.17(월) | 2021.05.18(화) | 2021.05.20(목) | 2021.05.21(금) | 2021.05.27(목) | 2021.05.31(월) ~ 2021.06.06(일) | 2021.06.07(월) ~ 2021.06.09(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 | 견본주택 방문 |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br>■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 | 당사 견본주택<br>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죽전역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 ~ 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1.02. 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건축과-20809(2021.05.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 ~ 25층 11개동 총 959세대 중 일반공급 6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분 348세대, 보류지 3세대)
특별공급 304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6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2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0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43세대] 포함
■ 주차대수 : 1,292대 (아파트 1,275대, 근린생활시설 17대)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1000290 | 01 | 059.9759 | 59 | 59.9759 | 21.3408 | 81.3167 | 41.4411 | 122.7578 | 33.9390 | 126 | 13 | 13 | 26 | 4 | 9 | 65 | 61 | 11 |
| | | 02 | 074.8423 | 74 | 74.8423 | 24.0045 | 98.8468 | 51.7132 | 150.5600 | 41.2555 | 122 | 12 | 12 | 24 | 4 | 9 | 61 | 61 | 7 |
| | | 03 | 084.9721A | 84A | 84.9721 | 24.8308 | 109.8029 | 58.7125 | 168.5154 | 45.8282 | 8 | 1 | 1 | 2 | 1 | 1 | 6 | 2 | 1 |
| | | 04 | 084.7573B | 84B | 84.7573 | 24.7976 | 109.5549 | 58.5641 | 168.1190 | 45.7247 | 342 | 34 | 34 | 68 | 10 | 24 | 170 | 172 | 21 |
| | | 05 | 114.1618 | 114 | 114.1618 | 31.7595 | 145.9213 | 78.8815 | 224.8028 | 60.9029 | 10 | - | 1 | - | 1 | - | 2 | 8 | - |
| | 합 계 | | | | | | | | | | 608 | 60 | 61 | 120 | 20 | 43 | 304 | 304 | 40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 동호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 지정일 |
| | | | | | | | | | | 21. 11. 01 | 22. 05. 01 | 22. 11. 01 | 23. 05. 01 | 23. 08. 01 | 23. 11. 01 | |
| 59 | 101동 1,2호<br>102동 1,2호<br>103동 1,2호<br>104동 1,2호<br>105동 1,2호<br>106동 1,2호 | 126 | 1층 | 7 | 199,192,600 | 219,807,400 | - | 419,0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 | | | 2층 | 12 | 202,045,000 | 222,955,000 | - | 425,0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127,500,000 |
| | | | 3 ~ 4층 | 24 | 205,372,800 | 226,627,200 | - | 432,0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43,200,000 | 129,600,000 |
| | | | 5 ~ 9층 | 38 | 208,700,600 | 230,299,400 | - | 439,0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131,700,000 |
| | | | 10 ~ 차상층 | 45 | 211,553,000 | 233,447,000 | - | 445,0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133,500,000 |
| 74 | 107동 1,2호<br>108동 1,2호<br>109동 1,2호<br>110동 1,2호 | 122 | 1층 | 1 | 243,404,800 | 268,595,200 | - | 512,0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153,600,000 |
| | | | 2층 | 8 | 247,208,000 | 272,792,000 | - | 520,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156,000,000 |
| | | | 3 ~ 4층 | 16 | 251,011,200 | 276,988,800 | - | 528,0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158,400,000 |
| | | | 5 ~ 9층 | 40 | 254,814,400 | 281,185,600 | - | 536,0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160,800,000 |
| | | | 10 ~ 차상층 | 51 | 259,093,000 | 285,907,000 | - | 545,000,000 | 54,500,000 | 54,500,000 | 54,500,000 | 54,500,000 | 54,500,000 | 54,500,000 | 54,500,000 | 163,500,000 |
| | | | 최상층 | 6 | 265,273,200 | 292,726,800 | - | 558,0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84A | 104동 5호<br>106동 5호<br>108동 5호<br>110동 5호 | 8 | 2층 | 1 | 276,682,800 | 305,317,200 | - | 582,000,000 | 58,200,000 | 58,200,000 | 58,200,000 | 58,200,000 | 58,200,000 | 58,200,000 | 58,200,000 | 174,600,000 |
| | | | 5 ~ 9층 | 1 | 285,240,000 | 314,760,000 | - | 60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180,000,000 |
| | | | 10 ~ 차상층 | 6 | 289,518,600 | 319,481,400 | - | 609,0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182,700,000 |
| 84B | 101동 3,4호<br>102동 3,4호<br>103동 3,4호<br>104동 3,4호<br>105동 3,4호<br>106동 3,4호<br>107동 3,4호<br>108동 3,4호<br>109동 3,4호<br>110동 3,4호<br>111동 3,4호 | 342 | 1층 | 10 | 269,076,400 | 296,923,600 | - | 566,0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169,800,000 |
| | | | 2층 | 22 | 273,355,000 | 301,645,000 | - | 575,0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172,500,000 |
| | | | 3 ~ 4층 | 44 | 277,633,600 | 306,366,400 | - | 584,0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 | | 5 ~ 9층 | 110 | 281,912,200 | 311,087,800 | - | 593,0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177,900,000 |
| | | | 10 ~ 차상층 | 138 | 286,190,800 | 315,809,200 | - | 602,000,000 | 60,200,000 | 60,200,000 | 60,200,000 | 60,200,000 | 60,200,000 | 60,200,000 | 60,200,000 | 180,600,000 |
| | | | 최상층 | 18 | 293,321,800 | 323,678,200 | - | 617,0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185,100,000 |
| 114 | 101동 5호<br>102동 5호<br>107동 5호<br>109동 5호<br>111동 1,2호 | 10 | 3 ~ 4층 | 1 | 362,077,100 | 395,391,700 | 39,531,200 | 797,0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239,100,000 |
| | | | 5 ~ 9층 | 2 | 367,528,700 | 401,344,900 | 40,126,400 | 809,0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242,700,000 |
| | | | 10 ~ 차상층 | 6 | 372,980,300 | 407,298,100 | 40,721,600 | 821,0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246,300,000 |
| | | | 최상층 | 1 | 382,520,600 | 417,716,200 | 41,763,200 | 842,0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252,60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중도금은 총 6회차로 50% 이자후불제 적용이며, 중도금 4차는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 주택형 표시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9759 | 074.8423 | 084.9721A | 084.7573B | 114.1618 |
|---|---|---|---|---|---|
| 약식표기 주택형 | 59 | 74 | 84A | 84B | 114 |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 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급면적 비율로,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회사가 대납한 이자는 입주자가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에 한함) 사업주체에 분양금, 발코니, 유상옵션 비용과 별도로 이자 비용(이자후불제적용)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연체료 산정기준에 적용하며, 또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임시사용승인등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당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채권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 | | 59 | 74 | 84A | 84B | 114 | 소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3 | 2 | - | 7 | - | 12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1 | 1 | - | 3 | - | 5 |
| |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 1 | 1 | - | 3 | - | 5 |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4 | 1 | 11 | - | 20 |
| | 장애인 | 4 | 4 | - | 10 | - | 18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13 | 12 | 1 | 34 | 1 | 6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26 | 24 | 2 | 68 | - | 120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4 | 4 | 1 | 10 | 1 | 2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9 | 9 | 1 | 24 | - | 43 |
| 합계 | | 65 | 61 | 6 | 170 | 2 | 30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합니다.
※ (생애최초)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br>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소방 및 정보통신 |
|---|---|---|---|
| 회사명 |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부흥이앤씨 | (주)한동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3,719,136,300원 | 658,513,429원 | 739,2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호 | 죽전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6-16, 4층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
| 법인등록번호 | 171871-0005174 | 110111-0208383 |

### ■ 견본주택 운영

| 견본주택 위치 | 관련사항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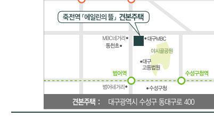 |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br>• 전 화 : 053-745-1006<br>•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br>• 홈페이지 운영안내 : http://www.jj-eileen.com<br>※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분양문의 | 견본주택 : 053-745-1006 |
|---|---|